

# COB 화물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00-102)

## 제 1 장 총칙

제1-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58조의 2제1항제 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등록한 COB (Courier on Board)업체가 항공기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휴대반출입하는 COB화물에 대한 통관절차와 일반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COB 화물의 신속통관과 효율적인 세관업무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1-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OB업체"라 함은 COB(Courier on Board)화물을 항공기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외국에서 국내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휴대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세관장에게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2. "COB화물"이라 함은 COB업체가 휴대반출입하는 상업서류 및 기타 견품 등을 말한다.
3. "쿠리어"라 함은 COB업체의 직원 또는 고용계약된 자로서 COB화물을 항공기 또는 선박을 이용하여 직접 휴대운송하는 자를 말한다.
4. "물품명세서"라 함은 쿠리어가 휴대운송하는 COB화물의 반출입내역을 기재한 것으로서 COB 업체가 세관장에게 제출한 문서를 말한다.
5. "쿠리어행낭"이라 함은 쿠리어가 COB화물을 운송하는데 사용하는 용기를 말한다.
6. "수출입관련 견품"이라 함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 2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으로 수출물품 제조용 견품, 주문수집이나 광고를 위한 목적으로만 수입되는 견품을 말한다.

제1-3조(COB화물의 인정범위) ① COB업체의 쿠리어가 휴대반출입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선적서류, 계약서, 보고서, 인쇄물, 사진, 도표 등 관세 및 내국세가 무세인 물품
2. 수출입관련 견품
3. 수출용견품 제작용 원재료 및 하자보수용 물품으로서 긴급을 요하는 물품임이 송품장, 사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세관장이 이를 인정하는 물품

② 세관장은 COB화물량의 증가 등으로 여행자휴대품 검사업무 또는 물품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물품에 대하여 이 고시에 의한 COB화물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1-4조(세관과 COB업체간의 양해각서 체결) ① 통

관지세관장과 COB업체는 자발적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업무를 처리 한다.

1. 세관에 대한 COB업체의 협조사항
  2. 법규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COB화물의 신속통관을 위한 절차
  3. 밀수나 부정무역 방지를 위한 협력
- ② 통관지세관장은 제1항의 양해각서 규정에 근거하여 COB업체가 관련규정 위반시 양해각서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통관편의를 제한할 수 있다.

## 제 2 장 COB업체관리

제2-1조(COB업체의 등록) ① COB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COB업체 등록신청서(별지제1호서식)를 통관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업체가 관세법시행령제64조의4제1항에서 정한 등록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는 COB업체등록증(별지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2-2조(COB업체의 책임과 의무) ① COB업체는 COB화물을 통한 밀수와 부정무역방지를 위하여 세관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COB업체는 당해 물품의 화주와 공동으로 COB화물의 관리 및 통관과정에 대한 관세법 및 관련법상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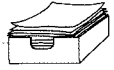
③ COB업체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제출한 물품명세서에 대하여 관세법상의 책임을 진다.

## 제 3 장 COB화물통관절차

제3-1조(COB화물의 반입) ① COB업체로부터 물품명세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당해물품 검사전에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COB화물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선별검사 후 현장면세처리한다.
2. 과세가격이 미화250불 이하인 견품은 현품검사 후 현장면세처리하되, 견품으로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신고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휴대품통관담당부서(자)에게 인계한다.
3. 과세가격이 미화250불을 초과하는 견품 및 제 1-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휴대품통



관 담당부서(자)에게 인계한다.

③ COB화물을 검사한 세관공무원은 검사결과를 휴대품유치서 등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쿠리어의 여행자휴대품신고서 및 물품명세서와 함께 휴대품통관담당부서(자)에게 인계한다.

1. 유치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쿠리어명의로 휴대품유치서를 발급하여 COB업체명을 병기한 후 총반입건수, 면세건수, 유치건수를 기재하되, 유치물품에 대하여는 AWB(Air Way Bill) 또는 B/L번호, 품명, 포장개수, 중량, 화주, 쿠리어행낭 색상(면세 과세대상) 등을 기재한다.
2. 유치물품이 없는 경우에는 쿠리어의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총반입건수, 면세건수를 기재한다.

제3-2조(COB화물의 수입통관) ① 휴대품통관담당부서(자)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된 COB화물을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처리한다.

1.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 이하인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견품으로 인정하는 물품은 면세처리한다.
2. 수출용견품 제작용 원재료등 관세환급을 받을 물품은 일반화물로 취급하여 정상수입통관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불을 초과하는 견품과 하자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COB화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대품유치서에 의거 간이통관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세관장은 유치된 COB화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현품검사 및 가격심사를 할 수 있다.

제3-3조(COB화물의 수출통관) ① 세관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받은 물품명세서를 검토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출화물에 대한 현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 휴대수출하는 물품이 제1-3조에서 정한 COB화물로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법령에 의하여 수출이 제한되는 물품일 경우에는 수출통관절차에 관한 고시에 의거 수출신고수리를 득한 후 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 4 장 조사 등

제4-1조(조사) ① 세관장은 COB화물에 대한 검사 및 심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또는 상표법 등의 위반혐의로 조사할 수 있다.

1. 제3-2조에 의한 물품명세서에 일부품목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품명, 가격, 수량등 주요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2. 신고물품이외의 물품이 수입되었을 때(다만,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3. 관세법상 수입금지 품목이나 타법령에서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물품을 불법수입한 경우(다만, 범칙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함.)

4. COB업체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가 COB화물을 취급하는 경우
  5. 견품면세 또는 반입제한 회피목적으로 물품을 분할하여 반입하는 경우
  6. 기타 세관장이 범칙혐의가 있다고 인정한 때
- 제4-2조(필요한 조치) ① 세관장은 관세법시행령 제64조의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COB업체가 항공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면허·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COB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시행령제6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COB화물 운송업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관세법 제7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항공법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사업이 정지된 경우
  3. COB업체 또는 그 임원·직원·쿠리어가 COB화물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관세법 제179조, 제180조, 제182조 또는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 ③ 세관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제 5 장 기 타

제5-1조(준용규정) COB화물의 통관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고시 및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제5-2조(내규운용) 세관장은 자체실정에 적합한 COB화물의 통관에 관한 세부절차를 내규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0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이전에 김포세관내규에 의하여 COB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이 고시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②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청고시제 99-21호) 제6장의 규정은 적용을 정지하고 이 고시로 갈음한다.

